

[붙임 2] 연구 및 교육경력 산출기준

경력 내용	환산인정률(%)
1. 교육경력	
가.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	
① 국방대학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과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	100
② 사관학교의 교관(부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한함)으로 근무한 경력	100
③ 학력인정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 근무한 경력	100
④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 근무한 경력	60
⑤ 대학 또는 전문대학 시간강사의 교육경력	50
⑥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겸임교수, 초빙교수(객원교수, 강의 교수 등)의 교육경력	50
나.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	
① 중고등학교 교원 교육경력이 (전문)대학에서 담당한 학과목과 부합되는 경우	40
②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	40
③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(전문)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	40
④ 유치원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(전문)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	40
다. 조교 및 체육 코치 등	
① 대학 (총)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	70
② 공인된 체육단체(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)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	70

경력 내용	환산인정률(%)
2. 연구경력	
가. 최종 학위취득자	
① 박사학위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연구경력	석·박사과정 재학년수 (석·박사과정을 포함하여, 석·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)
②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연구경력	석사과정 재학년수(단, 2년을 초과할 수 없다)
나. 최종 학위과정 수료자 등	
①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자의 연구경력. 단,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그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자의 연구경력	박사과정 재학년수(석·박사과정을 포함하여, 석·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) × 0.7
②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자의 연구경력	석사과정 재학년수(단, 2년을 초과할 수 없다) × 0.7
다.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경력	
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(실험실습을 포함한다)를 대학·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경력	100
라.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	100
마. 다음의 연구원(소)에서 연구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	
① 연구원(소)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	100
②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	100
③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시행령에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	100
④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	100
바. 기타의 연구기관이나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한 경력	
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	100

경력 내용	환산인정률(%)
3. 산업체등 근무경력	
가. 국가기관등 근무경력	
① 대학(전문대학 포함) 전공분야를 국가기관(시설 및 군 경력 포함)에서 당해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	100
② 대학(전문대학 포함)에서 전공한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	70
③ 대학(전문대학 포함)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(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)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	100
나. 민간기업체등 근무경력	
① 공과계대학(공업교육대학, 공업교육학과 포함)졸업자로서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산업체에서 그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· 대기업체 등 · 중기업체	70
② 상과대학 졸업자로서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	50
③ 대학 신문학과 졸업자의 언론기관에서 기자 및 편집원으로 근무한 경력	50
④ 대학(전문대학 포함) 전공분야를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· 대기업체 등 · 중기업체	50
다. 자격증 소지자 등의 근무경력	
① 판사·검사로 근무한 경력	100
② 변호사 개업기간	100
③ 공인회계사·세무사·감정평가사·변리사 개업기간	50
④ 한국 해양대학, 부경대학, 목포해양대학 졸업자로서 갑종1등 항해사 (기관사) 이상 면허소지자의 원양구역 승선경력, 항공대 졸업자중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	100
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	70

경력 내용	환산인정률(%)
라. 의사등 근무경력	
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(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 제외)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병원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	50
② 의(치)과대학 졸업자의 (한)의원 개업기간	50
③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(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 제외)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병원에서 전문의사로 근무한 경력	70
④ 국가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(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 제외)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병원에서 전임 간호원으로 근무한 경력	50
마. 성직자 근무 경력	
①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한 경력	50
②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	50
바. 외국공관 근무경력	
① 대학에서 외국어과를 전공한 자의 외국 공관에서 근무한 경력	70
사. 예·체능 관련 단체 주요임원 근무경력	
① 공인된 상설 예·체능 및 창작·실기예 관한 단체 주요간부의 근무경력	50